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22.(화) 11:00 < 4.23.(수) 조간 > 배포 2025. 4. 22.(화)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3→6개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월 제도 도입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24년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2개월 초과)하여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85건) 차지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하여,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개정 공포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담당자	사무관	진세운 (044-203-3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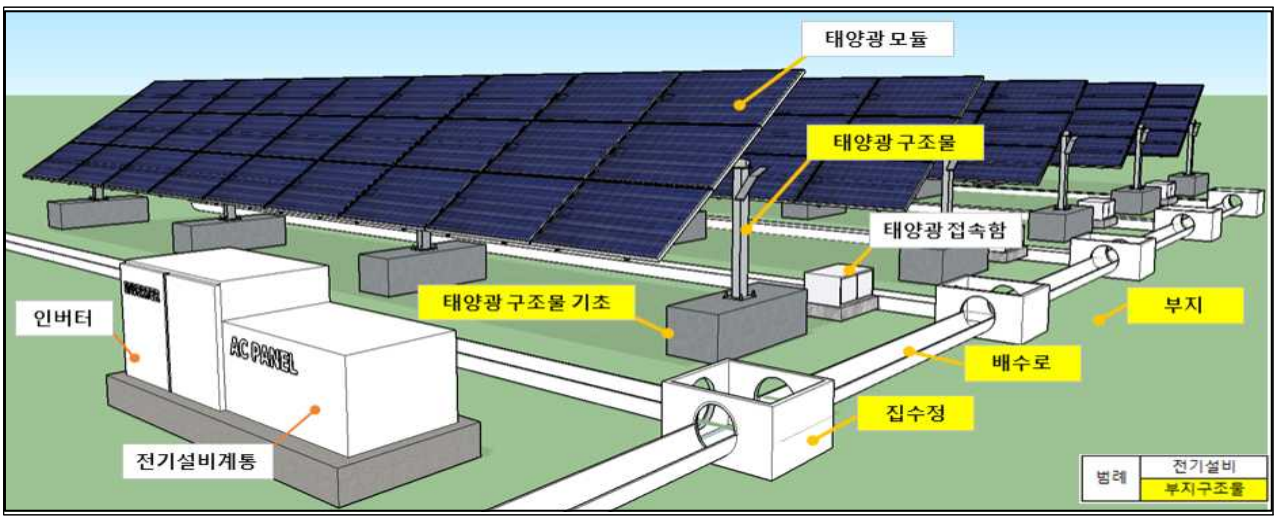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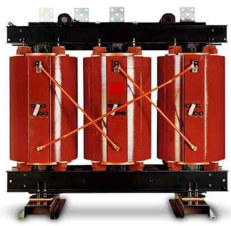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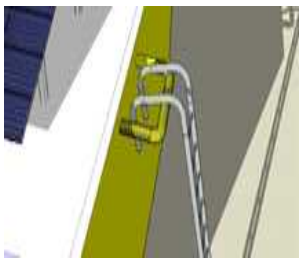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태양광발전설비 주요 구성도 및 검사항목**

□ 주요 구성도



□ 검사항목

태양전지	전력변환장치·접속반	전선로·배선	변압기
			
• KS 인증·규격, 외관 • 전기적 특성(출력 등) • 절연, 접지 등	• KS 인증·규격, 외관 • 제어·보호·경보장치 • 운전시험, 단독운전 방지 등	• 인증·규격, 외관 • 굵기, 공사방법, 접속상태 • 절연, 접지 등	• 인증·규격, 외관 • 용량, 절연내력, 접속 • 절연, 접지 등
보호·차단장치	**부하운전·계측장치**	**부지 및 구조물**	**기타**
			
• 인증·규격, 외관 • 계전기 정정, 동작상태 • 차단기-계전기 연동 등	• 일사량 기준 출력가능 발전 이상유무(30분 이상) • 상별 전압, 전류, 전력 계측 등	• 구조계산서, 배수평면도 • 기초, 구조물, 배수로, 부지 시공 및 관리상태 등	• 사다리, 점검통로, 난간 • 보호울타리, 위험표시 • 피뢰장치 등